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4. 6 선고 2020가단69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3. 23.

판결 선고2021. 4. 6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전남 완도군 D 대 109m²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81. 11. 12. 접수 제300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편병호

별지